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28호

「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공고

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5회 순천시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인 「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0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안 :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7. 30. ~ 8. 3.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장숙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2804호

○발의연월일 : 2018. 7. 30.
○발 의 자 : 장숙희 의원

1. 개정이유

○ 각 위원회의 “간사”는 사실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, “간사”의 명칭을 직무에 맡게 “부위원장”으로 변경코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각 위원회 “간사”의 명칭을 “부위원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11조)

※ 위원회 “부위원장” 명명 사례(전라남도)

전라남도의회 2011. 5. 13.개정, 신안군의회 2011. 2. 17.개정

목포시의회 2012. 8. 13.개정, 나주시의회 2014. 11. 1.개정

광양시의회 2016. 3. 16.개정, 해남군의회 2017. 6. 28.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

○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간사)” 를 **“(부위원장)”**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 를 **“부위원장”**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 을 **“부위원장은”**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중 “간사가” 를 각각 **“부위원장이”**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④위원장과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	제11조(부위원장) ① ----부위원장-----. ②부위원장은 ----------. ③---------- 부위원장이 ----------. ④---- 부위원장이 ----------.